

(가칭)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 동의안

의안 번호	994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와 국가보훈처, 문화체육, 용산구청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이 위치한 효창공원을 ‘효창독립 100년공원’(가칭)으로 조성을 추진을 합의하고 상호 협력하고자 협약을 체결함
- 나. 해당사업은 본 협약에 따라 우리시의 예산편성 및 공사시행 등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 다.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일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 3항의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협약 전 보고 및 협약서에 효력발생 시기 조건을 붙인 후 체결할 수 있어 협약을 선행하였으며,
- 라. 효창독립 100년공원의 성공적인 사업의 실행을 위해 해당 협약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독립운동가 묘역이 위치한 효창공원을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조성

- 위 치 : 용산구 효창동 255일대
- 면 적 : 171.294m²
- 사업기간 : '18.11월 ~ '21. 6월 (공원부분 착공예정)
- 도시계획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시설 공원(근린공원)
- 총사업비 : 약 120,000백만원 (국비1: 시비1)
- 주요 사업일정
 - '19. 5월~'20.6월 기본계획 수립 및 포럼 운영
 - '19.10월~'20.3월 예비타당성 조사
 - '20.3월 중투, 공유재산 심의
 - '20.3~6월 국제현상설계 공모
 - '20.6월 공원위원회(市) 심의 및 문화재현상(문화재청) 변경
 - '20.7월~'21.6월 기본 및 실시설계
 - '21.6월 공원 착공 및 운동장 일부 철거

나. 주요협약내용

- 협약개요
 - 협 약 자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용산구청
 - 협약목적 : 독립운동가 묘역과 효창운동장이 위치한 효창공원을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 목적
 - 협 약 일 : '19. 7. 2(화) 14:00
- 협약대상 : 효창공원 및 효창운동장의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사업
- 조성방향 :
 - 독립운동장 묘역과 축구장이 공존하되 하나의 공간으로 조성
 - 단절된 공원을 주변과 연계, 항상 쉽게 이용하는 열린 명소
 - 운동장 일부 철거 및 축구장 존치, 역사·장소 가치 존중

○ 기관별 역할

[서울시] 본 사업 및 연계사업의 총괄 시행, 보훈처와 예산확보·관련계획 수립 등 공동이행

[보훈처] 독립운동가 묘역 관리 및 공원 재단장, 서울시와 예산확보·관련계획 수립 등 공동이행

[문화재청] 문화재 보존관리 자문,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국유지사용허가 등 행정사항 협조

[용산구] 관련계획 수립 협의 및 협조, 조성사업 행정절차 협조 및 지원

○ 협약기간 :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사업 완료까지 유효

단,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로부터 효력발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첨부자료

- 효창독립 100년공원 조성 협약서 1부.

※ 작성자 : 공공개발기획단 개발정책팀 서주옥 (☎2133-8354)

효창독립 100년공원(가칭)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라 한다.), 문화재청, 용산구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이 위치한 효창공원을 ‘효창독립 100년공원’(가칭)으로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보훈처”, “문화재청”, “용산구”가 각 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독립운동가 묘역과 효창운동장이 위치한 효창공원 일대를 ‘효창독립 100년공원’(가칭)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원칙) “서울시”와 “보훈처”, “문화재청”, “용산구”는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 아래,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업무협약의 대상사업) 업무협약 대상 사업은 ‘효창독립 100년공원’(가칭)으로 효창공원을 일상 속의 추모공간이자 대한민국의 정신을 담은 장소로 조성하는 것을 사업 목표로 한다.

제4조(조성방향) “서울시”와 “보훈처”, “문화재청”, “용산구”는 효창공원을 ‘효창독립 100년공원’(가칭)으로 조성하기 위해 아래 조성방향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

1. 독립운동가 묘역과 축구장은 서로 공존하되, 효창공원과 효창운동장을 하나의 공간이자 일상의 추모공간으로 조성한다.
2. 단절된 공원을 주변과 연계하여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항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명소로 조성한다.
3. 효창운동장의 일부 시설은 철거하고 축구장은 존치하되 역사 및 장소의 가치를 존중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제5조(기관별 역할분담) 제3조의 사업 및 제4조의 조성방향을 이행하기 위해 “서울시”와 “보훈처”, “문화재청”, “용산구”는 다음과 같이 사업을 분담하여 추진하되, 각 기관과 협의를 거친다.

① 서울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효창독립 100년공원'(가칭) 사업의 총괄 시행
2. 효창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공사 및 그 외 '효창독립 100년공원'(가칭)과 연계된 사업의 추진
3. 보훈처와 공동으로 '효창독립 100년공원'(가칭) 사업 예산 확보
4. 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허가 및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편의 제공
5.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포럼운영 및 공론화, 현상설계 공모 등 관련 계획과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의 공동 이행

② 보훈처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효창공원 내 독립유공자 묘역의 국가 관리
2. 묘역과 연결된 공원의 재단장 추진
3. 서울시와 공동으로 '효창독립 100년공원'(가칭) 사업 예산 확보
4.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포럼운영 및 공론화, 현상설계 공모 등 관련 계획과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등의 공동 이행

③ 문화재청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재 보존관리에 관한 자문 등 협조
2. '효창독립 100년공원'(가칭) 사업 추진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국유재산사용허가 등 행정사항 협조

④ 용산구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효창독립 100년공원'(가칭) 추진 관련 계획 등 수립 협의 및 참여
2. 효창공원 및 효창운동장 재정비 등 관련 행정절차 협조 및 지원


제6조(세부사항과 변경) 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협약 내용 증 해석 상 이의가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각 기관이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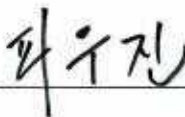
제7조(협약기간 및 효력발생) 본 협약은 각 기관의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동 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 유효하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의결을 받은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비밀유지) 각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된 사안을 통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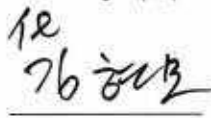
제9조(협약서의 작성 및 보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4부를 작성하고, "보훈처", "문화재청", "서울시", "용산구"가 서명 또는 인감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7월 2일

 국가보훈처
처장 피우진



 문화재청
청장 정재숙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용산구
구청장 성장현

